

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

제정	1989년	1월	1일	조례 제	1호	
개정	1989년	5월	2일	조례 제	124호	
개정	1989년	7월	7일	조례 제	140호	
개정	1990년	7월	28일	조례 제	192호	
개정	1990년	10월	19일	조례 제	201호	
개정	1990년	11월	29일	조례 제	204호	
개정	1997년	9월	20일	조례 제	466호	
개정	1998년	10월	14일	조례 제	506호	부칙
개정	1999년	10월	1일	조례 제	559호	부칙
개정	2001년	7월	21일	조례 제	666호	
개정	2001년	10월	31일	조례 제	687호	부칙
개정	2007년	1월	5일	조례 제	908호	
				(행정기구 설치조례)		
개정	2009년	3월	9일	조례 제	1012호	
				(행정기구 설치조례)		
일부개정	2011년	12월	14일	조례 제	1175호	
				(행정기구 설치조례)		
일부개정	2017년	4월	3일	조례 제	1563호	
				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	
일부개정	2017년	9월	26일	조례 제	1616호	
				(제명개정)		
일부개정	2018년	12월	26일	조례 제	1693호	
				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	
일부개정	2019년	9월	30일	조례 제	1739호	
				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	

제1조(목적)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, 심의, 연구, 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1. 7. 21, 2017. 9. 26>

제2조(구성) ①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 9. 26>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「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1. 7. 21, 2001. 10. 31, 2007. 1. 5, 2009. 3. 9, 2017. 4. 3, 2017. 9. 26, 2019. 9. 30>

-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·소장·홍보담당관·감사담당관·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10. 31, 2011. 12. 14, 2017. 9. 26, 2018. 12. 26>
-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9. 26>
-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. <개정 2001. 7. 21, 2017. 9. 26>

제3조(결정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 <개정 2017. 9. 26>

- 1.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시책의 개발·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
- 3.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단위 위원회, 심의회, 심사·추진위원회, 협의회 등 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
- 4.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

[전문개정 2001. 7. 21]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는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1. 7. 21, 2017. 9. 26>

-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<단서신설 2001. 7. 21>
-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7. 21, 2017. 9. 26>
-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

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7. 21, 2017. 9. 26>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 <개정 2017. 9. 26>

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,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. <개정 2017. 9. 26>

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신설 2001. 7. 21>

제5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 <개정 2017. 9. 26>

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,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[전문개정 2001. 7. 21]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 9. 26>

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실비변상)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9. 26>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9. 26>

부칙

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9. 5. 2 조례 제12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

부칙 <1989. 7. 7 조례 제14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0. 7. 28 조례 제19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0. 10. 19 조례 제20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0. 11. 29 조례 제20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7. 9. 20 조례 제46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14 조례 제506호 부칙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7. 21 조례 제66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10. 31 조례 제687호 부칙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1. 5 조례 제908호, 행정기구 설치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오산시의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⑨ 및 ⑩ 생략

부칙 <2009. 3. 9 조례 제1012호, 행정기구 설치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「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⑪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11. 12. 14 조례 제1175호, 행정기구 설치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국장·담당관·과·소장”을 “국장·소장·부서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⑤⑩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4. 3 조례 제156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「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⑪ 부터 ③④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9. 26 조례 제161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2. 26 조례 제169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「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홍보감사관·기획예산관”을 “홍보담당관·감사담당관·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⑧ 부터 ③②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9. 30 조례 제173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규칙 제86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

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

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② 까지 생략